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2.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9월 19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9년 9월 24일

라. 상정일자 : 제21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9. 9. 2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도시국장 이정화)

가. 제안이유

- 노후 건축물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그 재원 조성을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목적(안 제1조)

-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그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 사업 관련 수입금(안 제4조)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등(안 제5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설정(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정옥)

- 본 건은 노후 건축물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 안 제4조에서는 세입으로 특별회계 재원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경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일시차입, 잉여금의 처리, 존속기한 등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92호, 2017. 4.18. 개정)에 따라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통해 확보하려는 것으로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입법체계나 자구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48 호
----------	---------

제출연월일: 2019. 9.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노후 건축물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인 지역건축안전 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그 재원 조성을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그밖에 건축물의 안전 관리 사업 관련 수입금(안 제4조)

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등 (안 제5조)

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설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법」,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다.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3)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할 사항 없음

4)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9. 8.14. ~ 2019. 9. 3,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등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제6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
2. 비용추계 기준: 운영비(경비 및 자산취득비), 인건비, 점검비, 사업비, 기타
3. 비용추계 상세내역

구 센터 (1개소 당 개략적 비용)	
운영비	약 110,654천원(경비 및 자산취득비)
인건비	약 215,259천원(전문인력 3명 인건비)
점검비	약 53,264천원(건축물 및 공사장 점검비)
사업비	약 211,167천원(지진·화재 성능보강 및 긴급 보수비)
기타	약 70,136천원(예비비)
	약 660,480천 원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 이행강제금×30% (2020년 세입액 약22억)	660,480	660,480	660,480	660,480	660,480	3,302,400
	소계(a)	660,480	660,480	660,480	660,480	660,480	3,302,400
세출	○ 운영비	110,654	110,654	110,654	110,654	110,654	553,270
	○ 인건비	215,259	215,259	215,259	215,259	215,259	1,076,295
	○ 점검비	53,264	53,264	53,264	53,264	53,264	266,320
	○ 사업비	211,167	211,167	211,167	211,167	211,167	1,055,835
	○ 기타	70,136	70,136	70,136	70,136	70,136	350,680
	소계(b)	660,480	660,480	660,480	660,480	660,480	3,302,400
☐ 총 비용(a-b)		0	0	0	0	0	0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구비	세외수입	660,480	660,480	660,480	660,480	660,480	3,302,400
합계		660,480	660,480	660,480	660,480	660,480	3,302,400

6. 추가의견: 없음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국 건축과 김준혁
연 락 처	02-2670-3684